

#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세열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30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2월 31일

발 의 자 : 이세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달호, 김재형, 김제리,  
김화숙, 성흠제, 송재혁,  
유용, 이광성, 이준형,  
이현찬, 정진술, 한기영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다양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 
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를  
명확하게 규정하고, 참여 실적이 부진한 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 
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.

(안 제25조제4항).

나. 1년 이상 미참여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4항 단서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 
있다. 다만,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  
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민참여옴부즈만 해촉에 대한 적용례) 제25조제4항의 개정  
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  
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(시민참여옴부즈만) ① 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·조사·감시·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복지·도시안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, 도시안전, 산업경제, 생활환경, 도시교통(도시계획), 교육문화, 일반행정의 7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한다.</p> <p>③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7조를 준용한다,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자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시민참여옴부즈만 선정은 시민단체, 학계, 법조계 추천 또는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</p>	<p>제25조(시민참여옴부즈만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위원회에서 심사 선별하여 시장이 위  
촉한다.

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의 감  
사·조사·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 
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 
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, 정책제언  
등을 할 수 있다.

⑥ (현행과 같음)